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문성호 의원
- 나. 의안번호: 제3509호
- 다. 제안일자: 2026. 2. 9.
- 라. 회부일자: 2026. 2. 12.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 내 새로운 교통수단이자 한강을 활용한 훌륭한 관광 및 여가 활동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한강버스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함.
- 특히 관리와 점검 등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확실한 관리 주체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주 요 내 용

- 가. 선원 및 운항 종사자가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실시 의무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나. 선박의 청결 및 위상 상태와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속 관리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근거함(안 제7조제3항).
- 다. 선박을 책임지는 선장의 승객 보호 의무 및 사고 대응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6항).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버스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업자의 점검·관리 의무 및 시장의 감독·점검 권한 등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7조제2항은 사업자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선박 및 내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 제4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유지·관리 의무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므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임.

또한, 선박에 이상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 점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기본 의무에 해당할 것임.

- 안 제7조제3항은 사업자에게 안전시설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이 이를 감독하거나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 제3조2) 및 제4조의 시장 및 사업자 책무와 유사하므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임.

또한, “안전시설”, “정기점검”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기점검”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3)에 따른 법정 검사인지, 서울시 차원의 행정적 검사인지 명확하지 않음.

- 안 제7조제6항은 한강버스 선장이 사고 발생 시 승객 보호, 관계기관 보고 및 구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7조 각 항은 한강버스 안전운항

1)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대중교통으로서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한강버스 운항에 다양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2)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정기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진을 위한 시책, 즉 사전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적 조치에 관한 동 개정 사항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해당 내용은 사업자와 선장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법적⁴⁾ 의무 사항에 해당하고 현행 조례 제6조제1호에 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도선사업 관련 법규의 준수'를 명시하고 있는바, 별도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임.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2.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3. 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立標), 호안(護岸), 그 밖에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